

#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강광주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110
----------	-------

제출연월일 : 2019. 5. .

제 출 자 : 강광주 의원 외 12인

## 1. 개정이유

- 최근 지방의원의 국외연수 제도의 부실한 운영에 대한 시민 사회적 개선 요구가 커짐에 따라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대한 기본 원칙과 절차 등을 명확히 정하여 공무국외여행을 보다 내실있게 운영할 필요성 대두
-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개정을 통해 심사를 강화하고 공무국외여행의 투명성을 제고하여 지방의회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함.

## 2. 주요내용

### 가. 조례명 변경

- ▶ ‘공무국외여행 조례’ 를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로 변경

### 나. 공무국외출장의 범위와 기본원칙을 정함(안 제2조, 제3조)

### 다. 심사위원회 구성의 공정성 제고

- ▶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 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안 제5조제2항)
- ▶ 심사위원회는 7명 이상으로 구성, 민간위원 3분의 2 이상(안 제5조제3항)
- ▶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 호선(안 제5조제4항)

### 라. 심사위원회 심사기능 강화

- ▶ 심사 시 세부항목별 체크리스트 마련하여 심사 기준 구체화(안 제6조)
- ▶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안 제7조제2항)

**마. 정보공개 확대 및 사후관리 강화**

- ▶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공개(안 제10조제3항)
- ▶ 공무국외출장 후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결과를 보고하도록 규정(안 제11조제1항)

**바. 공무국외출장의 제한 및 출장경비 환수 규정 신설(안 제9조)**

- ▶ 의회가 개회중이거나 의원 전원 또는 1명이 국외출장 하고자 하는 경우, 선거가 있는 해에 임기만료 예정인 의원 등의 경우 국외출장을 제한
- ▶ 의결된 출장목적 및 계획과 달리 집행된 경비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

**사. 예산의 추가 편성·집행 금지 신설(안 제12조)**

3. 개정조례안 : 붙임1

4.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2

5. 관계법령 발췌서 : 해당사항 없음

6. 관련사업계획서 : 해당사항 없음

7. 예산수반사항 : 해당사항 없음

8. 사전예고(결과) : 의견없음

○ 사전예고 : 2019. 5. 25.(토) ~ 5. 29.(수)

**9. 기타 참고사항**

○ 현행조례 : 붙임3

○ 행정안전부 표준개정(안) : 붙임4

<붙임 1>

##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조례에 적용하는 공무국외출장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 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
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여 개최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
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출장하는 경우
4. 안산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 출장하는 경우
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출장을 하는 경우
6. 그 밖에 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출장 하는 경우

**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목적을 벗어난 공무국외출장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

④ 의장은 안산시의회 의원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

**제4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5조(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

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2/3이상이 되어야 한다.

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결정한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⑥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재중이거나 기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1.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및 출장자의 적합성
2. 공무국외출장의 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3. 공무국외출장의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4. 기타 국외출장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2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출장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출장계획서(이하 “출장계획서”라 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 중 해당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는 의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며,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

④ 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국외출장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

⑤ 의장은 회의록을 심사위원회를 마친 직후 그 회의록을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⑥ 심사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심사위원회에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

**제8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 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안산시소속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공무국외출장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출장을 제한 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의회가 개회중인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한 경우는 제외한다.

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3. 특별한 사유없이 임기만료에 의한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출장을 계획하는 경우
  4. 공무국외출장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경우
  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
- 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출장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

**제10조(공무국외출장계획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0일 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출장계획서를 작성하여 심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무국외출장에 참여하는 의원이 다수일 경우 1인을 선정하여 대표로 출장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출장계획을 제안설명 해야 한다.

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출장계획서를 3일 이내에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제11조(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출 등)** ①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은 귀국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6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와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다만, 60일 이내에 회기가 열리지 않는 경우 공무국외출장 이후 처음 개최되는 상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보고해야 한다.

② 의장은 공무국외출장보고서를 의회 자료실에 소장·비치하고 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열람이 용이하도록 조치하여 정보를 공유하도록 해야 한다.

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출장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출장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

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

제13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출장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습득한 지식이나 기술을 관련 의정 분야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에 따라 위촉되어 있는 심사위원회 위원은 잔여임기동안 제5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소관 실·과		안산시의회
입 안 자	시 의원	강광주 의원 (행정 3573) 대표발의

[별표]

## 공무국외출장 심사기준(제6조제1항 관련)

항목	심사기준	예	아니오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과거 3년 이내에 방문기관을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 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 이내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별지 제1호서식]

# 공무국외출장 계획서 (제10조 관련)

## 1. 출장개요

출장목적							
출장동기 및 내용							
출장기간	. . . ~ . . . ( 일간)						
출 장 국							
출 장 자	소속	직급	성명	성별	연령	출 장 경 비	
						금 액	부담기관
	계		명			천원	

## 2. 출장일정

월 일 (요일)	출발지	도착지	방문기관	업 무 내 용	접촉예정인물 (직책포함)

### ○ 출장자 개인별 업무 내용

연 번	소 속	직 급	성 명	업 무 내 용

※ 2인이상 동행하는 경우에는 개인별 업무수행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

### 3. 출장경비

성명	계	체재비			항공운임	준비금	기타
		일비	식비	숙박비			
계							

### 4. 출장효과

[별지 제2호서식]

## 공무국외출장 보고서 작성요령(제11조제1항 관련)

### 1. 보고서 규격 및 분량

- 보고서의 규격은 A4(210mm × 297mm) 양면에 워드프로세서 또는 인쇄형태로 작성 및 좌철을 원칙으로 하고, 분량은 20쪽 이상이어야 함.

### 2. 보고서 구성형식

- 보고서는 논문형식으로 작성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개조식으로 할 수 있으며, 쪽수 표시는 하단중앙에 함.

#### <목차 구성 예시>

- I. (서론부분) : 출장의 배경 및 출장세부내용 등
- II. (본론부분) : 주요업무수행사항 및 관련정보·분석내용 등
- III. (결론부분) : 주요 내용 요지 및 향후 활용방안 등
- IV. 수집자료 및 참고문헌 : 저자·서명·출판사·출판년도·  
총면수

- 보고서의 맨 첫 장(겉표지)에는 제목·제출연월·소속의회를, 둘째 장(속표지)에는 출장국·출장목적·출장기간·보고서 작성자 및 출장자 인적사항을, 셋째 장에 목차를 기재

(1) 걸표지 예시

<보고서>

○○ 제도관련 공무국외출장보고서  
(제 목)

○○년도 ○월  
(월까지만 표시)

○○의회

(2) 속표지 예시

공무국외출장 개요

1. 출 장 국 :
2. 출장목적 :
3. 출장기간 :
4. 보고서 작성자 : 소속위원회, 성명
5. 출장자 인적사항(2인 이상인 경우)

소속위원회	성 명	비 고

3. 첨부자료

- 출장계획에 따라 현지 일정이 진행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 영수증 또는 Invoice
  - 회의 참석 또는 기관 방문시 면담·회의 장면 사진 등

4. 작성시 참고사항

- 보고서는 최신 정보·기술 및 제도개선에 관한 사항, 보고내용의 활용방안, 유사목적으로 출장하게 될 출장자를 위한 조언, 기타 지방자치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며, 그 활용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관련 통계·법령·문헌 등 구체적인 근거를 명시
- 동일한 목적으로 2인 이상의 출장자가 단체로 출장한 경우에는 대표자를 보고 책임자로 하여 합동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음

## 신 · 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안산시의회 의원의 공무 국외여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가 정하는 공무국외여행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에 정식으로 초청된 경우</li> <li>2. 3개 국가 이상의 중앙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국제회의에 참가하는 경우</li> <li>3.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출장하는 경우</li> </ol> <p>&lt;신 설&gt;</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4.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는 경우</li> <li>5. 기타 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연수 및 출장하는 경우</li> </ol> <p>&lt;신 설&gt;</p>	<p style="text-align: center;"><u>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u></p> <p>제1조(목적) ----- 공무 국외활동에 -----</p> <p>-----</p> <p>제2조(적용범위) ----- 공무국외활동-----</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외국의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의회가 직접 주최하는 공식행사에 공식으로 초청된 경우</li> <li>2. ----- ----- <u>참여하여 개최되는</u> -----</li> <li>3. 자매결연의 체결이나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국외활동하는 경우</li> <li>4. <u>안산시장의 요청을 받아 국외 활동하는 경우</u></li> <li>5.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공무로 국외활동을 하는 경우</li> <li>6. 그 밖에 <u>안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활동 하는 경우</u></li> </ol> <p>제3조(기본원칙) ① <u>공무국외활동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u></p> <p>② <u>공무국외활동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u></p> <p>③ <u>공무국외활동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u></p> <p>④ <u>의장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공무국외활동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u></p>

현 행	개 정 안
<p>제3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산시의회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공무국외여행은 의장이 허가한다.</p> <p>제4조(심사위원회의 설치 운영 등) ① 공무국외 여행을 심사하기 위하여 의장은 의원, 대학교 수 및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구성된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심사위원회(이하“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p> <p>&lt;신 설&gt;</p> <p>②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u>7인 이내</u>로 구성하되,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u>2분의1 이상</u>이 되어야 한다.</p> <p>③ 심사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u>호선</u>하며, 간사는 시의회의 의정담당이다.</p> <p>④ 위촉하는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단, 위원이 소속된 분야에서 이적 등 신분변동이 있는 경우에는 해촉하고 후임 위원을 새로 위촉하되 임기는 전임 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p> <p>⑤ &lt;생 략&gt;</p> <p>&lt;신 설&gt;</p>	<p>제4조(허가권자) 제2조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u>의원의 공무국외활동은 의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u></p> <p>제5조(심사위원회 설치·운영) ① <u>의장은 공무국외활동의 타당성과 적합성 등을 심사하기 위해 의원 및 제2항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안산시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운영해야 한다.</u></p> <p>② <u>심사위원회의 민간위원은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등의 추천을 받아 의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의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u></p> <p>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u>7명 이상</u>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은 <u>2/3이상</u> 이어야 한다.</p> <p>④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u>호선</u>으로 결정한다.</p> <p>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u>한 차례만</u> 연임할 수 있다. 다만, ----- ----- -----</p> <p>⑥ &lt;현행과 같음&gt;</p> <p>⑦ <u>그밖에 심사위원회의 직능, 구성 등 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u></p>

현 행

개 정 안

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사한다.

- 1. 국외여행의 필요성 및 공무국외여행 참가자의 적합성
- 2. 국외여행 대상 국가·기관의 타당성
- 3. 국외여행 기간 및 경비의 적정성
- 4. 국외여행 보고서의 검토
- 5. 기타 국외여행과 관련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예산편성 한도액 범위 안에서 의원이 제2조 제1호부터 제3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 공무국외여행을 할 경우에는 심사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6조(심사기준) 공무국외여행 심사기준은 다음과 같다.

- 1.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
- 2.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되어야 하며, 여행 인원이 2인 이상일 경우에는 개인별 임무를 부여하는 등 경제성 있고 조직적인 국외여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 3.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 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4.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방문시기를 선택하되, 의원임기 중 특정시기에 집중되지 않도록 한다.
- 5.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여행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

- 1. 공무국외활동의 필요성 및 활동자의 적합성
- 2. 공무국외활동의 국가와 방문기관의 타당성
- 3. 공무국외활동의 기간과 경비의 적정성

<삭 제>

- 4. 기타 국외활동과 관련된 사항

② ----- 제2조 제1호 부터 제4호까지의 공무국외활동을 -----

<별표 신설>

현 행	개 정 안
<p>제7조(회의) ① 심사위원회 회의는 연수 및 출장 계획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심사위원회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u>과반수</u>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③ 심사위원 중 해당 공무국외여행에 참가하는 의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며, 제7조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제7조(회의) ① ----- 위원장이 소집하며, 제10조제1항에 따라 제출된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하여야 한다.</p> <p>② ----- ----- <u>3분의 2 이상의</u> ----- -----</p> <p>③ ----- 공무국외활동에 ----- ----- -----</p>
<p>&lt;신 설&gt;</p>	<p>④ <u>심사위원회는 대면심사를 원칙으로 하며 공무국외활동의 대표의원(이하 “대표의원”이라 한다)에게 심사에 필요한 질의를 할 수 있다.</u></p> <p><u>다만, 위원장은 회의 개최가 어렵거나 서면으로 심사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사의결할 수 있다.</u></p>
<p>④ 위원장은 심사위원회를 마친 직후 그 회의록을 지체 없이 안산시의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p>	<p>⑤ 의장은 ----- ----- -----</p>
<p>&lt;신 설&gt;</p>	<p>⑥ <u>심사위원회는 그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1인을 두되, 간사는 의회사무국 의정팀장이 된다.</u></p>
<p>제8조(수당 및 여비) 심사위원회에 참석하는 민간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8조(수당 및 여비) ----- ----- 「안산시소속위원회의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p>

현 행	개 정 안
<p>&lt;신 설&gt;</p> <p>제9조(여행계획서의 제출) ① 공무국외여행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출국 45일전까지 별지 제1호 서식에 의거 여행계획서를 심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p> <p>② 제1항의 경우 공무국외여행에 참여하는 의원이 다수일 경우 1인을 선정하여 대표로 여행계획서를 제출할 수 있다.</p> <p>&lt;신 설&gt;</p>	<p>제9조(공무국외활동 제한) ① 의장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 공무국외활동을 제한할 수 있다. 제4호의 경우에는 징계종류에 따라 제한기간을 달리 정할 수 있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의회가 개회중일 경우, 다만, 국제회의 참석 등 부득이할 경우는 제외한다.</li> <li>2.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 전원 또는 1명으로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li> <li>3. 특별한 사유없이 의원선거가 있는 해에 공무국외활동을 계획하는 경우</li> <li>4. 공무국외활동 중 품위유지의무 위반 등 물의를 일으켜 징계를 받은 의원일 경우</li> <li>5.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6조 및 제60조에 따라 재난사태 또는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되는 경우</li> </ol> <p>②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경우 외에 심사위원회에서 의결된 활동 목적 및 계획과 달리 부당하게 지출된 경비에 대하여는 환수조치한다. 이 경우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환수금액 등을 확정한다.</p> <p>제10조(공무국외활동계획서 제출 등) ① --활동----- 출국 40일 ----- ----- 공무국외활동계획서(이하 “활동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 ----- . 다만, 다른 기관 등의 계획에 따를 경우에는 해당 계획서로 갈음할 수 있다.</p> <p>② -----활동에----- ----- . 이 경우 대표의원은 심사위원회에 참석하여 국외활동계획을 제안설명 해야 한다.</p> <p>③ 의장은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친 활동계획서를 3일 이내에 안산시의회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p>

현 행	개 정 안
<p data-bbox="132 302 242 336">&lt;신 설&gt;</p> <p data-bbox="132 795 778 922">제12조(사후관리 등) 의장은 공무국외여행에서 습득한 지식 또는 기술을 관련 의정활동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p>	<p data-bbox="810 291 1455 609">제12조(예산 편성·집행) ① 공무국외활동은 공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하여야 하며, 활동경비는 지방의회의원 국외여비 예산편성기준과 지급범위에 맞게 산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공식행사, 국제회의, 자매결연 사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산을 추가 편성·집행할 수 없다.</p> <p data-bbox="837 631 1455 757">②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선거가 있는 해의 예산편성 시 국외여비는 필요최소한으로 편성하여야 한다.</p> <p data-bbox="810 795 1455 922">제14조(사후관리 등) --- 공무국외활동을 마치고 귀국한 의원에 대하여 그가 -----이나 ----- 의정 분야에 ----- 해야 한다.</p>

# 신 · 구조문 대비표(별표)

현행	개정안																											
<p>&lt;신 설&gt;</p>	<table border="1"> <thead> <tr> <th data-bbox="796 465 911 539">항목</th> <th data-bbox="911 465 1401 539">심사기준</th> </tr> </thead> <tbody> <tr> <td data-bbox="796 539 911 763" rowspan="3">출장의 필요성</td> <td data-bbox="911 539 1401 629">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629 1401 696">2. 과거 3년 이내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696 1401 763">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가?</td> </tr> <tr> <td data-bbox="796 763 911 1137" rowspan="6">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td> <td data-bbox="911 763 1401 853">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853 1401 920">2. 과거 3년 이내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td> </tr> <tr> <td data-bbox="911 920 1401 987">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987 1401 1055">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1055 1401 1122">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1122 1401 1189">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td> </tr> <tr> <td data-bbox="796 1189 911 1361" rowspan="3">출장자의 적합성</td> <td data-bbox="911 1189 1401 1234">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td> </tr> <tr> <td data-bbox="911 1234 1401 1301">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1301 1401 1361">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td> </tr> <tr> <td data-bbox="796 1361 911 1547" rowspan="3">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td> <td data-bbox="911 1361 1401 1406">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1406 1401 1473">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td> </tr> <tr> <td data-bbox="911 1473 1401 1547">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td> </tr> <tr> <td data-bbox="796 1547 911 1704" rowspan="2">출장경비의 적정성</td> <td data-bbox="911 1547 1401 1615">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td> </tr> <tr> <td data-bbox="911 1615 1401 1704">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td> </tr> <tr> <td data-bbox="796 1704 911 1852" rowspan="2">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td> <td data-bbox="911 1704 1401 1771">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td> </tr> <tr> <td data-bbox="911 1771 1401 1852">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td> </tr> </tbody> </table>	항목	심사기준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과거 3년 이내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 이내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항목	심사기준																										
	출장의 필요성	1. 공무국외출장 이외의 수단으로 출장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가?																										
		2. 과거 3년 이내에 동일 목적으로 방문한 사례가 있는가?																										
		3. 해외사무소 또는 외국기관 파견인력으로 해당 업무수행이 가능한가?																										
	방문국과 방문기관의 타당성	1. 업무 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 및 기관을 방문하는가?																										
		2. 과거 3년 이내 또는 향후 다른 출장자가 동일 기관을 방문할 계획이 있는지?																										
		3. 수집하려는 자료가 인터넷이나 문헌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지 확인했는가?																										
		4. 방문국가 및 기관의 섭외가 완료되었는가?																										
		5. 1일 최소 1개 기관 이상 방문하는가?																										
		6. 여러 국가나 도시 방문 시 불필요한 이동은 없는가?																										
	출장자의 적합성	1. 출장목적 및 계획 등에 비추어 출장자 선정이 적합한가?																										
		2. 직무상 이해관계가 있는 기관·단체·개인이 출장에 포함되었는가?																										
		3. 출장목적에 맞게 필수 인원으로 한정하고 출장자 간 업무분장이 명확한가?																										
출장기간 및 시기의 적시성	1. 출장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간을 책정했는가?																											
	2. 방문국의 관습, 공휴일 등을 감안, 방문 시기는 적합한가?																											
	3. 국내외 등 출장을 자제 해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가?																											
출장경비의 적정성	1. 공무국외출장 경비는 예산편성기준 및 지급 범위에 맞게 산출되었는지?																											
	2. 타 기관으로부터 출장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 지원의 정당성 여부 및 지원금액이 적정한지?																											
감염병 및 안전사고 예방조치 적정성	1. 방문국 및 주변국의 감염병 발생 여부를 확인했는가?																											
	2. 현지활동 중 교통수단을 확보했는지?																											

#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의안 번호	8-170
----------	-------

제안년월일 : 2019. 6. 24.

제안자 : 의회운영위원장

## □ 수정이유

- 불필요한 규정을 삭제하고, 심사위원회 구성 인원의 한계를 명확하게 하며, 조문에 사용된 용어의 통일을 위함.

## □ 주요내용

- 「안산시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에 품위유지, 청렴의무 등이 규정되어 있으므로, 중복 규정할 필요가 없어 삭제함. (안 제3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구성 인원을 7명 이상에서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한계를 명확하게 정하고, 수학적 기호를 한글로 작성함. (안 제4조)
-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심사에서 심사·의결로 구체화하고, 일부 조문 중 심의라고 규정된 내용을 심사로 통일함. (안 제5조, 제6조)

#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안산시의회 안산시의회의원 공무국외여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3조를 삭제한다.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는 각각 안 제3조부터 안 제12조로 한다.

안 제4조제3항(개정안의 제5조제3항) 중 “7명 이상”을 “7명 이상 9명 이내로” 하고, “2/3이상”을 “3분의 2 이상”으로 한다.

안 제5조제1항(개정안의 제6조제1항) 중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를 “심사·의결한다”로 한다.

안 제6조제3항(개정안의 제7조제3항) 중 “심의·의결”를 “심사·의결”로 한다.

## 수정안 대비표

개정안	수정안
<p>제3조(기본원칙) ①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 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한다.</p> <p>② 공무국외출장 계획을 차질 없이 수행하고, 그 목적을 벗어나서는 아니 된다.</p> <p>③ 공무국외출장 기간 중 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동을 해서는 아니 된다.</p> <p>④ 의장은 안산시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들의 공무국외출장 참여기회를 형평성 있게 보장해야 한다.</p>	<p>&lt;삭 제&gt;</p>
<p>제4조 (생 략)</p>	<p>제3조 (개정안 제4조와 같음)</p>
<p>제5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p> <p>①·② (생 략)</p> <p>③ 심사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의 비율이 2/3이상이어야 한다.</p> <p>④·⑦ (생 략)</p>	<p>제4조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 설치·운영)</p> <p>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 7명 이상 9명 이내로 -----3분의 2 이상----- -.</p> <p>④·⑦ (개정안과 같음)</p>
<p>제6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① 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별표 기준에 따라 심사하고, 의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 4. (생 략)</p> <p>② (생 략)</p>	<p>제5조(심사위원회의 기능 및 심사기준) ① --- ----- --심사·의결한다. 1. ~ 4. (개정안과 같음) ② (개정안과 같음)</p>
<p>제7조(회의) ①·② (생략)</p> <p>③ 심사위원 중 해당 공무국외출장에 참가하는 의원은 심의·의결에서 제척하며, 제2항에 따른 재적위원 수의 계산에 있어서 이를 제외한다.</p> <p>④·⑥ (생 략)</p>	<p>제6조(회의) ①·② (개정안과 같음)</p> <p>③ ----- ---심사·의결----- ----- -.</p> <p>④·⑥ (개정안과 같음)</p>
<p>제8조 ~ 제13조 (생략)</p>	<p>제7조 ~ 제12조 (개정안 제8조부터 제13조와 같음)</p>